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 즉각 철회하라

경영계에는 '공짜 연장노동' 현찰, 노동자에게는 공수표

지난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개악된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도입요건도 대폭 완화시켰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아무 의미 없어

[합의문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한다고 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예외를 인정한다. 여기서 '불가피한 경우'라는 막연한 근거로 예외 조항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주관적, 임의적 판단에 의해 남용 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피해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중소·영세사업,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이러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일 뿐이다.

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과 탄력근로제 도입요건 완화

[합의문 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항은 이번 합의문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주별 근로시간만 정하면 일별 불규칙성이 증가하며 잔업수당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항과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문구 또한 문제이다. 결국 주별로 근로 (👉 뒷면으로 이어집니다)



(☞ 앞면에서 이어집니다) 시간을 정하고, 그 주별 근로시간마저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면 결국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문, 즉각 철회되어야

이번 합의문은 노동자, 경영자, 정부, 공익위원에서 1명씩 위원이 참석하여 나온 결과물이다. 이로 보아 애초부터 경사노위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정부와 공익위원이 경영자의 편으로 기울어진 형세에 놓여 있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를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라 생각하겠으며 정부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겠다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사회적 구성원 중 다수인 노동자들은 제쳐두고 소수인 경영자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문제가 많다. 기실 애초부터 탄력근로제라는 것이 잘못된 제도이다. 연장근로수당은 왜 존재하나? 연속 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없애지는 못할망정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그 합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9.3.6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 저지! 가자.총파업!

민주노총 노동법개악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총파업 제주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저지!

총력투쟁 대회 2019년 3월 6일(수) 전국동시

서울·인천·경기	16시 국회 앞	대구	16시 더불어민주당시당 (행정 자유한국당시당앞) [가인]
충북	15시 상당공원	경북	15시 포항노동지청 [가인]
대전	16시 대덕연구단지내(표준과학연구원) [가인]	부산	16시 자유한국당 시당 [가인]
세종충남	15시 천안역 집결, 행진, 15시 40분 천안 아우리 본대회	울산	논의중
전북	16시 노동청 앞	경남	16시 시청광장 [가인]
광주	17시 518민주광장	강원	16시 원주중앙농협 앞
전남	광주본부같이 진행(618방안관련 투쟁포함)	제주	19시 제주시청 [가인]

경사노위 2차 개악

노조활동 더욱 제약하는 노동법 개악안도 발의돼 있어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안 외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된 노조법 개정안도 3월 5일 경 한국노총-경총 추가 야합이 예견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 측이 요구한 개악안도 포함되어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4년으로 확대, 쟁의행위 시 현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처벌조항 삭제, 쟁의행위 찬반투표 유효기간 단축 등 쟁의행위 관련 법 개악이 그것이다.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이 모든 개악안은 3~4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노동법 개악안에 방망이를 두드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경영계가 요구하면 한국노총이 야합하고 정부·여당이 손잡고 빠르게 밀어 붙이는 총체적 노동개악 국면이다. 민주노총은 3월 6일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3~4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대국회 전면 투쟁을 벌일 것이다.